

#### ④ 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·토석채취·공작물설치·토지분할·물건적치)

- 개요 :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
- 법적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
-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	법정 사항	사전심사청구
처리기간	15일	10일
구비서류	<p>(1)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/p> <p>(2)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)</p> <p>(3) 설계도서(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)</p> <p>(4)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(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)</p> <p>(5)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, 세목,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)</p> <p>(6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(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(7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</p>	<p>(1)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/p> <p>(2)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(현장 위치도, 실측도, 경사도, 공사계획서 등)</p> <p>(3) 설계도서</p> <p>(4)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(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)</p> <p><del>(5)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, 세목,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)</del></p> <p>(6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(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<del>(7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</del></p>